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과반구성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9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개정안의 내용 .....          | 3  |
| 2. 검토의견 .....             | 4  |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 11 |



# I. 개요

##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26.
- (3) 회 부 일 : 2025. 5. 2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3항).



|                                                                                                                                                                                                                                                                              |                                                                   |
|------------------------------------------------------------------------------------------------------------------------------------------------------------------------------------------------------------------------------------------------------------------------------|-------------------------------------------------------------------|
|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br>④ ~ ⑧ (생략)                                                                                                                                                                                                      |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br>④ ~ ⑧ (현행과 같음) |
| <p>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p> <p>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이 법 시행 후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

## 2. 검토의견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sup>1)</sup>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두는 위원회로,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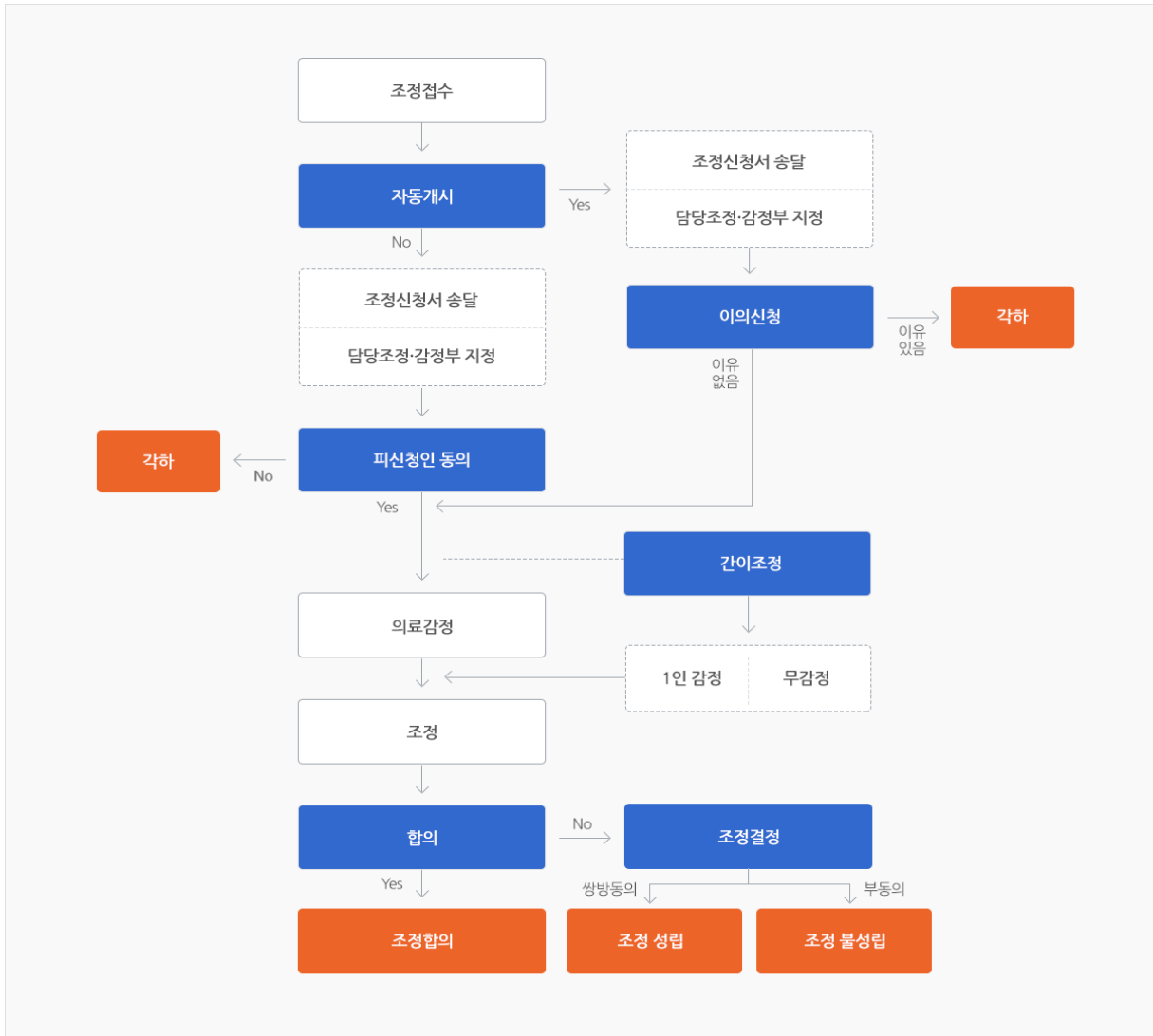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이며,
- ‘중재’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조정중재원이 결정하면 그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임.

□ 조정중재원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sup>3)</sup>에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조정위원장은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음.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 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조정중재원 조정절차도 >



조정부<sup>4)</sup>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이 2명(상임위원인 법조인이 조정부장이 됨), 그 외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 단체 추천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및 전문가 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는 구조임.

#### < 조정부 구성 >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전문가 |
|--------------------|----------------------|------------|-----|
| 2명<br>(조정부장 1명 포함) | 1명                   | 1명         | 1명  |

즉, 100명~300명에 이르는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풀(Pool)단으로서 기능하며, 각 분쟁사건마다 조정부를 달리 구성하게 되는데,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봄.

- 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의 비율이 낮고, 조정부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중에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1명에 지나지 않아, 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권익 대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조정위원회 위원 직역별 위촉 현황('25.4.30. 기준) >

| 직역        | 인원(명)          | 비율    |
|-----------|----------------|-------|
| 법조인       | 71(상임위원 7명 포함) | 25.6% |
| 의료인       | 122            | 44.0% |
| 소비자권익     | 42             | 15.2% |
| 전문가(비의료인) | 42             | 15.2% |
| 합계        | 277            | 100%  |

□ 우선,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달리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는 구조가 아니라 사안별로 조정부를 구성하는 5명의 조정위원들이 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조 정부는 해당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체 조정위원 구성 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위원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추천위원을 구성함에 따라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음.

#### < 조정위원회 의료인 조정위원(122명) 진료과목별 현황 >

| 진료과목(인원, 명) |         | 진료과목(인원, 명) | 진료과목(인원, 명) | 진료과목(인원, 명) |
|-------------|---------|-------------|-------------|-------------|
| 가정의학과(1)    |         | 외과(7)       | 성형외과(3)     | 마취통증의학과(4)  |
| 내과<br>(22)  | 감염(1)   | 응급의학과(3)    | 소아청소년과(3)   | 병리학/법의학(1)  |
|             | 내분비(1)  | 이비인후과(3)    | 신경과(3)      | 비뇨의학과(4)    |
|             | 소화기(6)  | 재활의학과(1)    | 신경외과(14)    | 산부인과(9)     |
|             | 순환기(5)  | 정신건강의학과(1)  | 피부과(4)      | 안과(5)       |
|             | 신장(3)   | 정형외과(13)    | 한의학(3)      | 약학(1)       |
|             | 혈액종양(2) | 진단검사의학과(1)  | 흉부외과(5)     | 영상의학과(1)    |
|             | 호흡기(4)  | 치과(10)      |             |             |

※ '25.4.30. 기준,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건수를 고려하여 위촉

- 특히, 개정안은 조정위원 수의 상한을 300명으로 하고 있는 조항은 따로 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정위원을 300명까지 둔다고 하더라도<sup>5)</sup> 개정안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을

5) 현재의 법조인·의료인·전문가 위원의 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수의 상한까지 구성한다고 가정

15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법조인·의료인·전문가 위원은 최대 149명이 됨.

세 직역을 동수로 한다면 의료인 위원은 약 50명으로 현재 122명 대비 41%에 불과하여 진료과목별 조정위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인 위원을 현재와 같이 122명으로 두기 위해서는 법조인 및 전문가 위원은 각각 13~14명(법조인의 경우 상임위원 7명 포함)으로 축소되어 풀(Pool)로서 기능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2020년 이전 조항(법률 제14221호)<sup>6)</sup>에서는 조정위원 중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학계 전문가의 비율이 각각 40%, 20%, 20%, 20%가 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개정법률에서 “경직된 조정위원 정수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조정부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각 조정부 구성 시 각 분야별 구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예방장치도 마련되어 있음”<sup>7)</sup>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전체 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법정 비율을 삭제한 바 있음.

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1호)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736,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 다음으로, 조정부 구성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조정부의 결정은 곧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양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정부 구성에 있어 요구되는 공정성의 기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조정의 경우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일방의 부동의만 있어도 조정이 불성립되며, 이 경우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는 의료소송으로 진행되어 보건의료인과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결정의 수용성<sup>8)</sup>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부 구성의 기계적 중립성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정부는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립성이 요구되는 조정부의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 측에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자료2).

#### < 개정안에 따른 조정부 구성 변화 >

|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전문가 |
|---------------|-----------------|----------------------|------------|-----|
| 현행<br>(총 5명)  | 2명<br>(조정부장 포함) | 1명                   | 1명         | 1명  |
| 개정안<br>(총 7명) | “               | “                    | 3명         | “   |

8) 2024년 조정성공률은 2023년 대비 1.2%p 떨어짐(참고자료1)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는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을 통해 의료분쟁이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균형적 참여를 통한 법률적·중립적 의사결정이 필수적임.
  - 현재 조 정부는 법조인(2명), 의료인(1명), 비영리민간단체(1명), 교수(1명)의 총 5명으로 구성되고, 의료사고 당사자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의료인과 환자 측 추천위원이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운영 중임.
- 조정과정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전문적 의견을 토대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의료분쟁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조인과 의료인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단체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환자의 권익보장이나 보다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중검토)

- 2020년 4월 7일 법률 일부개정으로 조정위원의 원활한 위촉을 위해 조정위원의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였는데, 다시 구성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의료인 직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다양한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사고를 조정·중재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진료과목당 보건의료인 조정위원은 평균 4명 수준에 불과하며 몇몇 진료과는 단 1명의 조정위원만 위촉된 경우도 있음.
- 소비자권익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려면 법조인 및 의료인 등 다른 직군의 조정위원을 대폭 줄여야 하므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분쟁은 법정 기한 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권익위원이 조정부 전체 7명 위원 중 3명 (타 직역 대비 2명 추가)으로 구성하는 경우, 직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 측의 조정참여 적극성과 조정성공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3) 대한병원협회 (반대)

- 현재 조정위원회에는 진료과별 조정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과반수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경우 조정부 구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 또한, 현행 조 정부는 보건의료인 1인과 비보건의료인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의료인의 비중이 높아 소비자위원의 증원 필요성이 낮으며, 환자·의료인 양측의 공동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양측의 균형 있는 조정부 구성이 필요함.

- 유사사례로 「노동조합법」 제55조<sup>9)</sup>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경우 사용자, 근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4) 대한의사협회 (반대)

- 의료분쟁 조정은 고도의 의료지식과 법률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 행위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의료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위원의 비율이 감소하여 조정의 질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의료적 사실 판단이 왜곡되거나 단순화될 위험이 있음.
-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권익과 함께 전문적 의료지식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위원회에 특정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 조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의 조정 참여가 위축되고 분쟁 장기화·소송 증가 등과 같은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현재 조정부 조정위원 5명을 구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7명으로 증원할 경우, 심사·조정 등의 기간 연장을 초래하여 환자에게도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

---

9) 「노동조합법」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 (5) 대한한 의사협회 (반대)

- 의료분쟁 조정은 법적, 의학적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으로,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현재 조정위원회 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비중을 높여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단순 피해회복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 전체 책임감과 의료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94 |

## 참고1

##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공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 구분     | 계             | 합의         | 조정 결정      |            | 중재      |         | 조정<br>성공률 |
|--------|---------------|------------|------------|------------|---------|---------|-----------|
|        |               |            | 성립         | 불성립        | 화해중재    | 중재판정    |           |
| 2020년  | 1,182 (100.0) | 824 (50.7) | 158 (9.7)  | 200 (12.3) | - (0.0) | - (0.0) | 61.1      |
| 2021년  | 1,192 (100.0) | 861 (72.2) | 154 (12.9) | 177 (14.8) | - (0.0) | - (0.0) | 66.0      |
| 2022년  | 1,111 (100.0) | 871 (78.4) | 116 (10.4) | 122 (11.0) | 1 (0.1) | 1 (0.1) | 72.9      |
| 2023년  | 1,162 (100.0) | 905 (77.9) | 97 (8.3)   | 159 (13.7) | 1 (0.1) | - (0.0) | 69.1      |
| 2024년  | 1,088 (100.0) | 933 (85.8) | 58 (5.3)   | 97 (8.9)   | - (0.0) | - (0.0) | 67.9      |
| 상급종합병원 | 215 (19.8)    | 188 (20.2) | 6 (10.3)   | 21 (21.6)  | -       | -       | 64.7      |
| 종합병원   | 283 (26.0)    | 237 (25.4) | 24 (41.4)  | 22 (22.7)  | -       | -       | 66.2      |
| 병원     | 198 (18.2)    | 170 (18.2) | 6 (10.3)   | 22 (22.7)  | -       | -       | 66.2      |
| 치과병원   | 22 (2.0)      | 19 (2.0)   | 1 (1.7)    | 2 (2.1)    | -       | -       | 87.0      |
| 한방병원   | 7 (0.6)       | 5 (0.5)    | 1 (1.7)    | 1 (1.0)    | -       | -       | 60.0      |
| 요양병원   | 30 (2.8)      | 22 (2.4)   | 2 (3.4)    | 6 (6.2)    | -       | -       | 47.1      |
| 의원     | 208 (19.1)    | 184 (19.7) | 13 (22.4)  | 11 (11.3)  | -       | -       | 73.5      |
| 치과의원   | 100 (9.2)     | 86 (9.2)   | 3 (5.2)    | 11 (11.3)  | -       | -       | 74.2      |
| 한의원    | 19 (1.7)      | 17 (1.8)   | 1 (1.7)    | 1 (1.0)    | -       | -       | 85.7      |
| 약국     | 1 (0.1)       | 1 (0.1)    | - (0.0)    | - (0.0)    | -       | -       | 100.0     |
| 보건소    | - (0.0)       | - (0.0)    | - (0.0)    | - (0.0)    | -       | -       | -         |
| 보건지소   | 1 (0.1)       | 1 (0.1)    | - (0.0)    | - (0.0)    | -       | -       | 100.0     |
| 정신병원   | 4 (0.4)       | 3 (0.3)    | 1 (1.7)    | - (0.0)    | -       | -       | 80.0      |

자료: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참고2

## 환자대변인 사업 개요

- ☐ (개요) 의료분쟁 감정·조정 등 과정에서 조정 등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조력자(변호사)를 지원해 법적·의학적 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환자’ 및 ‘그 가족’)
  - \* 중재사건의 경우 분쟁의 양 당사자(환자 및 그 가족, 보건의료인)
- ☐ (지원내용) 감정·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
-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가 대변인 조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 신청 시 함께 신청 → 중재원 추천 및 매칭을 거쳐 대변인 선정 및 지원
- ☐ (대변인 운영)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 대변인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윤리서약 등을 거쳐 운영
  - 50인 내외를 선발해 대변인 풀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대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표창 수여,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인정 및 의무교육 추진 등 지원
- ☐ (예산) '25년, 국비 3억원
- ☐ (운영방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탁 수행

### ◆ 의료분쟁 조정이란?

- (개요)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 의료사고 감정 → 조정 또는 합의
- (효력)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특례 적용